



제 419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불법어업활동피해어업인지원기금 설치〉

■ 이병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541호)

2024. 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 선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불법어업활동피해어업인지원기금 설치	2
[참고자료]	9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병진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4. 10. 4.

3. 회 부 일 : 2024. 10. 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어업활동을 한 외국인이 납부한 벌금이나 담보금이 일반회계로 귀속되어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과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상의 집행된 벌금이나 국고귀속된 담보금을 주요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신설하여 외국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사업에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불법어업활동피해어업인지원기금 설치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어업활동을 한 외국인이 납부한 벌금이나 담보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불법어업활동피해어업인지원기금’을 설치하여 외국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15조의2(불법어업활동피해어업인지원기금의 설치 및 운영) ① 정부는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불법어업활동피해어업인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u> <u>② 기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u> <u>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u> <u>1. 이 법에 따라 납부된 벌금액의 100분의 30이내</u> <u>2. 제24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u>

	<u>는 담보금</u> 3. <u>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u> 4. <u>기금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u> ④ <u>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u> 1. <u>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으로 생명, 신체 등 인적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 대한 지원</u> 2. <u>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으로 어구, 선박 등 물적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 대한 지원</u> 3. <u>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쓰인 어구 등 해양쓰레기 수거에 대한 지원</u> 4. <u>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u> 5. <u>그 밖에 기금설치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u> ⑤ <u>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u> ⑥ <u>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

나. 검토의견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이하 “현행법”이라 함)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관계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 어업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으로, 동 법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제24조는 불법 어업을 하여 단속된 외국인으로부터 수령한 담보금의 국고 귀속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현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불법 어업 외국어선에 대한 사법절차를 보면, 검사나 사법경찰이 현행법에 따라 정선, 승선, 검색, 나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검사가 법령 위반자에게 담보금 결정서를 고지하여 담보금이 납부되면 즉시 선박과 선원을 반환·석방하며, 미납 시에는 선장·항해사·기관사 등을 구속·기소하고 선원은 강제 출국시키고 있음¹⁾.

이 과정에서 납부된 담보금 및 그 밖에 재판 등을 통해 징수된 벌금은 현재 일반회계로 귀속되고 있는데, 개정안은 해당 담보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불법어업활동피해어업인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하여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으로 생명·신체 등

1)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23조(위반 선박 등에 대한 사법절차) ①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선박 또는 그 선박의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에 대하여 정선, 승선, 검색, 나포(拿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검사에게 보고하되, 사정이 급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제1항의 조치를 하였거나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에게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이 하는 어업활동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담보금이나 담보금 제공을 보증하는 서류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에게 제출되었을 때에는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를 석방하고, 선박을 반환한다는 취지

2. 담보금의 금액

④ 검사는 제3항에 따라 고지된 담보금 또는 그 제공을 보증하는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를 석방하고 선박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2호에 따른 담보금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검사가 위반 사항의 내용과 위반횟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한다.

인적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나 어구·선박 등 물적 피해를 입은 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른 기금의 운영체계, 재원 및 용도]

재 원	사 용 용 도
○ 이 법에 따라 납부된 벌금액의 30% 이내 ○ 제24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는 담보금 ○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 기금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으로 생명, 신체 등 인적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 대한 지원 ○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으로 어구, 선박 등 물적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 대한 지원 ○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쓰인 어구 등 해양쓰레기 수거에 대한 지원 ○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 그 밖에 기금설치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
운 영 주 체	
○ 기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운용·관리	

□ 최근 3년간 외국어선 불법 어업 단속현황을 보면, 2021년 108척, 2022년 88척, 2023년 113척이 단속되었고, 담보금의 경우 2021년 79억원, 2022년 35억원, 2023년 80억원이 납부되었음²⁾.

개정안은 이 같은 불법 어업으로부터 납부된 담보금 및 벌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설치해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우리 어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에 활용하려는 것으로, 외국인의 불법 어업으로 인해 배타적 경제수역의 수산자원이

2) 벌금의 경우 법원의 판결로 징수되는 것으로 이 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 징수액이 별도로 집계되어 있지는 않음.

지속적으로 손실되고 있는 점 및 우리 어업인에게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취지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우선, 개정안과 같이 기금을 신설하고자 할 때는 「국가재정법」 제14조³⁾에 따라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이 요구되는데, 현재 담보금의 납부액을 보면 2011년 이후 전반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단속어선의 수에 따라 납부액의 변동성도 큰 편으로 재원 확보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

기금 신설을 위해서는 「국가재정법」 별표의 개정 및 「국가재정법」 제14조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별표의 개정 및 기금 신설의 적절성 등에 대한 관계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국가재정법」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①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자문회의에 자문하여야 한다.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5.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 현재 본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04542호)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발의되어 있음.

[불법어업 단속현황 및 담보금 납부현황]

(단위 : 척, 백만원)

연도	총계	유형별 적발현황				담보금 징수	
		영해침범	특정금지 구역침범	무허가	제한조건 위반 등	납부(척수)	미납(척수)
2011	534	32	17	170	315	14,586(508)	1,400(26)
2012	467	31	34	106	296	17,149(396)	6,550(71)
2013	487	34	13	153	287	24,417(406)	8,245(81)
2014	341	24	19	85	213	18,997(305)	3,440(36)
2015	568	11	17	109	431	26,449(497)	9,820(71)
2016	405	23	34	86	262	26,652(350)	6,100(55)
2017	278	9	10	39	220	16,639(244)	6,930(34)
2018	258	7	17	25	209	17,304(235)	3,900(23)
2019	195	9	5	14	167	12,349(177)	2,000(18)
2020	35	4	2	4	25	2,460(30)	300(5)
2021	108	4	5	23	76	7,898(90)	4,200(18)
2022	88	4	3	8	73	3,532(76)	2,300(12)
2023	113	9	3	12	89	7,970(102)	600(11)
2024.9	59	1	-	8	50	5,060(55)	800(4)

자료: 해양수산부

또한, 과거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유사 법률안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의견에서, 담보금 제도는 위반자의 출석 등 법집행 담보를 위해 부과하는 인신구속 해제를 위한 보증금으로 일반 벌금과 같이 국고(일반회계)로 귀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던 점을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관련 정부부처의 의견으로, 해양수산부는 담보금 징수액의 변동성이 크고 최근 감소추세에 있는 점, 벌금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변동성이 커 그 규모를 사전에 파악하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 소지가 있으므로, 일반회계, 농특회계 등 현재 운용 중인 회계에서 피해어업인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422

4) 현재 일반회계, 농특회계 등으로 추진되는 불법어업 관련 사업예산 현황은 [참고자료1] 참조

참고

불법어업 관련 및 피해지역·어업인 지원사업 현황

□ 불법어업 관련 일반회계 사업 예산

(단위 : 억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계	602	407	1,074	1,820	1,740	851
<어업지도관리>	231	43	704	1,436	1,311	430
- (어업지도선 건조)	(204)	(18)	(678)	(1,389)	(1,264)	(377)
- (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 운용)	(15)	(17)	(21)	(21)	(21)	(25)
- (불법어업 홍보)	(7)	(7)	(4)	(3)	(3)	(3)
- (중대위반어선 몰수폐선 등)	(5)	(1)	(1)	(23)	(23)	(25)
<어업지도선 관리·운영>	371	364	370	384	429	421
- (지도선 유류비 및 수리비)	(324)	(316)	(323)	(323)	(377)	(353)
- (노후장비 대체 및 장비확충)	(20)	(25)	(20)	(25)	(20)	(35)
- (선박보험료, 예인선 임차료)	(20)	(17)	(19)	(19)	(19)	(19)
- (불법어구 처리비용 등)	(7)	(6)	(8)	(17)	(13)	(14)

□ 법률개정(안)의 지원사업 관련 예산

(단위 : 억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계	1,219	1,052	1,019	1,020	1,028	1,810
<수산자원 조성사업(농특)>	781	712	657	659	665	659
- (바다숲 및 연안바다목장 조성·관리)	(352)	(334)	(300)	(312)	(269)	(272)
- (산란·서식장 조성 및 종묘방류)	(49)	(47)	(50)	(46)	(101)	(42)
- (총허용어획량(TAC)제도 운영 등)	(380)	(331)	(307)	(301)	(295)	(345)
<어업인 삶의 질 향상(농특)>	25	28	38	27	29	30
- (어업인 안전쉼터 및 안전보건센터 운영)	(19)	(17)	(16)	(14)	(14)	(-)
- (어업도우미 및 가사도우미 지원)	(3)	(3)	(3)	(3)	(2)	(2)
- (어업인 질환 현황조사 등)	(3)	(8)	(19)	(10)	(13)	(28)
<경영안정화 지원(기금, 융자)>	413	312	324	334	334	1,121
- (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83)	(83)	(95)	(105)	(105)	(105)
- (수산장비구입 지원)	(30)	(29)	(29)	(29)	(29)	(16)
- (재해등 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	(300)	(200)	(200)	(200)	(200)	(1,000)